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54
----------	-------

발의연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전현희 · 안태준 · 박지원
권향엽 · 정진욱 · 김문수
추미애 · 김남희 · 김병주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제3항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수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삭 제>
제24조(정부의 지원) (생략) <신 설>	제24조(정부의 지원)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대통령령으로 정

<u><신 설></u>	<u>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u> <u>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u> <u>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u> <u>인정되는 사람</u> <u>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u> <u>원 수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	---